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6명(4급 2명,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제도과장”을 “회계계약제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개선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별표 2 중 총계 “1,643”을 “1,648”로 하고, 별정직 계 “8”을 “7”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600”을 “1,606”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를 “23”으로,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1”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6”을 “4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12”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0”으로, 행정사무관 “117”을 “11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4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7”을 “169”로, 전산사무관 “29”를 “28”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8”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를 “20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43”을 “1,648”로 하고, 별정직 계 “8”을 “7”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600”을 “1,606”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를 “23”으로,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1”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 “46”을 “4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12”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55”로, 행정사무관 “116”을 “11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4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4”를 “166”으로, 전산사무관 “29”를 “28”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8”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를 “203”으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5”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5”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5”를 “458”로 하고, 일반직 계 “446”을 “4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5”를 “408”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6”을 “327”로 하고, 일반직 계 “326”을 “3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90”을 “98”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9”를 “97”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나.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통신망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다.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명 (4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라.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마.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생략)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교부세과·회계 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회계계약제도과장-----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삭제>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삭제>
⑧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개선

⑧ ~ ⑱ (생략)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감독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⑨ ~ ⑲ (현행 제8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3</u>	<u>1,648</u>	+5
·	·	·	
·	·	·	
별정직 계	<u>8</u>	<u>7</u>	-1
·	·	·	
·	·	·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u>1</u>	<삭 제>	-1
·	·	·	
·	·	·	
일반직 계	<u>1,600</u>	<u>1606</u>	+6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2</u>	<u>23</u>	+1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5</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21</u>	<u>2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6</u>	<u>45</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9</u>	<u>12</u>	+3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9</u>	<u>50</u>	+1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15</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42</u> ·	<u>43</u> ·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167</u> · ·	<u>169</u> · ·	+2
전산사무관	<u>29</u>	<u>28</u>	-1
<u>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 ·	<u>1</u> · ·	<u><삭 제></u> · ·	-1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 ·	<u>7</u> · ·	<u>8</u> · ·	+1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9</u>	<u>30</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u>202</u> · ·	<u>203</u> · ·	+1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3</u>	<u>1,648</u>	+5
·	·	·	
·	·	·	
별정직 계	<u>8</u>	<u>7</u>	-1
·	·	·	
·	·	·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u>1</u>	<삭 제>	-1
·	·	·	
·	·	·	
일반직 계	<u>1,600</u>	<u>1,606</u>	+6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2</u>	<u>23</u>	+1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5</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21</u>	<u>2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6</u>	<u>45</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9</u>	<u>12</u>	+3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4</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u>116</u>	<u>114</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2</u>	<u>43</u>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4</u>	<u>166</u>	+2
·	·	·	
·	·	·	
전산사무관	<u>29</u>	<u>28</u>	-1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삭 제>	-1
·	·	·	
·	·	·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7</u>	<u>8</u>	+1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9</u>	<u>30</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2</u>	<u>203</u>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u>	<u>5</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u>	<u>5</u>	+2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5</u>	<u>458</u>	+3
일반직 계	<u>446</u>	<u>449</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5</u>	<u>408</u>	+3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6</u>	<u>327</u>	+1
일반직 계	<u>326</u>	<u>32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2</u>	<u>323</u>	+1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u>	<u>98</u>	+8
일반직 계	<u>90</u>	<u>98</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9</u>	<u>97</u>	+8